

직원 인권 보호 안내문

우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장기 요양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원 인권 보호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니, 수급자님과 보호자님께서도 안내문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내문에 따라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보호사' '요양사'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십시오.
-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 집 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담그기, 농사일 등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거나, 동거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無理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2.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수칙

-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수칙

-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입니다
- ❖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 "야", "애인", "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호칭도 포함됩니다.

-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입니다.
-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합니다.

2026년 1월